

제 911 호
1982. 5.2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편집 : 공보관 이흥우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통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비
제 1633 호 :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중 개정조례 3
제 1634 호 : 서울특별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 4
- 규 칙
제 1977 호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운영규칙 4
- 포 시
제 204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 26
제 205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2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628 서울특별시

제 20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27
제 20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인가	27

◎ 공 고

제 220 호 :	특정열 사용기자재 시공업체 지정취소	28
제 221 호 :	K.S 표시 정지처분해제 공고	28
제 222 호 :	구산동가압장시설공사 실시계획공람공고	29
제 224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완료공고	29
제 226 호 :	도시계획사업 (백화점) 변경시행공람공고	30
제 227 호 :	건설업 (단종) 면허 영업정지공고	30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33 호

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국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군 용에 공하는 군장성급(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사법 제 3 조 규정의 군장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유 자동차와 국방과학 연구용에 공하는 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 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책임 기술원 및 호봉 7 호 이상의 연구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제 1 항중 "군장성급 및 연구원과 국방정책자문위원이 군용 또는 국방과학연구용과 국방정책자문위원용에 공하기 위하여"를 "군장성급 및 연구원이 군용 및 국방과학 연구용에 공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 5 조 제 1 항중 "제조연호"를 "제조연도"로 하고 "군용 및 국방과학연구용과 국당정책자문위원용에 공하기 위하여"를 "군용 및 국방과학 연구용에 공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34 호

서울특별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시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조합및등 연합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계 의거 사업소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 (면제대상)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대상은 의료보험조합 및 동연합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면제 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백 [인]

○ 서울특별시규칙 제 1977 호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운영규칙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운영규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및 부설입대아파트(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운영원칙) ①회관은 근로청소년의 선도 및 자질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회관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지역에 확대실시 할 수 있다.

제 3 조 (사업계획서 작성등) ①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회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교육사업
2. 정서함양사업
3. 상담사업
4. 복지후생사업
5. 인보험동사업
6. 주거환경개선사업
7.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조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관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제 1호에 해당하는 자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장이 추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영등포구청 시민국장, 영등포 경찰서 정보1과장, 노동부 서울남부 지방사무소장, 영등포구 새마을 부녀회장, 영등포구 사회정화위원장, 영등포구 새마을 협의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남서울협의회장, 영등포구 직장 새마을협의회장,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본부 영등포구 지부장.

2. 위촉직위원

영등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대표, 청소년 선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 종교계 인사등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회관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근로청소년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3. 노, 사립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추진에 따른 제반업조에 관한 사항
5. 근로청소년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관 운영

제 5 조 (정신교육사업) ①근로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케하고 건전한 생활관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 대상자는 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청소년으로 하며 교육방법은 합숙훈련형태로 남, 여를 구분하여 편성 실시한다.

③교육 대상자는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확정된 인원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사업장 대표에게 통보한다.

④교육후 평가는 물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후 평가회, 성공사례 발표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 6 조 (정서함양사업) ①근로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과정은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과정을 설치하되, 일반 근로자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정을 설치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과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1. 교양 교육 과목

각종 계획및 성교육, 생활법률 직장생활, 공공생활, 가정생활에 관한 사항등

2. 취미 교육 과목

수원물, 요리, 꽃꽂이, 음악, 서예, 바둑, 레크레이션 지도등

④교육 대상자선정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자중에서 선정한다.

⑤교육후 효과들 지속시키고 여가선용및 취미생활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 작품 전시회 및 취미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상담사업) ①근로청소년들의 제반 고충을 접수하고 직장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②상담대상자는 근로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일반 근로자 및 일반 청소년이 상담 요구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상담사항은 이성, 결혼, 신앙, 건강, 노사관계, 법률, 취업문제 등 근로청소년들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초빙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⑥ 상담결과 관계기관과 협의할 사항은 협조 의뢰하며 가능한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복지후생사업) 매점 및 이·미용시설등을 설치하여 실비로 판매 운영함으로써 근로청소년들에게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실, 체육시설, 휴게실, 음악감상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 9 조 (인보험동사업) ① 회관내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인보험동의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② 인보험동사업의 주요내용은 근로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생조직 형성 유도 및 활동지도, 무료예식장 운영, 문학 및 예술작품 전시장운영, 문화영화상영, 기업주(임원포함) 및 지역사회 대표와 근로청소년들의

대화유지 등으로 한다.

제 3 장 임대아파트운영

제 10 조 (주거환경개선사업) ① 근로청소년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부설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인원은 1,000 명으로 하고, 1호당 입주인원은 5 인으로 한다.

제 11 조 (임주대상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미혼여성근로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주신청)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각 사업장 대표의 추천을 받아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대아파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신청서 1부 (별지 제 3 호 서식)
2. 소속사업장 대표의 추천서 1부 (별지 제 4 호 서식)
3.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부

제 13 조 (임주자선정) ① 관장은 임주자선정시 각 사업장에 근무 수

해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시설 확보유무 및 입주 신청자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신청자중 원호대상자 또는 모병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③관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불 결정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고 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한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대계약 및 입주) ①제 13조 제 3항에 의하여 입주결정 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내에 별지 제 6호서식에 의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임대계약시에는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사본 1부(별지 제 7호서식)와 소속사업장 대표의 보증각서 1부(별지 제 8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퇴관에 비치할 별지 제 9호서식에 의한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입주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2.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단, 제 16 조제 1항제 5호에 의하여 계약해지가 된 자중 입주 대상자가 다시 된자는 제외
4. 기타 입주시킬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 16 조 (계약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때에는 소속사업장 대표에게 통보한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3. 시설내에서 흡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문란하게 한자

<p>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자</p> <p>5. 제 11조에 의하여 임주대상자에게 제외된 자</p> <p>6. 타사업장에 전직한 자(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제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p> <p>7. 임대료등을 2월이상 체납한 자</p> <p>8. 판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p> <p>9. 기타 임대아파트 임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p> <p>②판장이 임대계약해지 통고를 할 때에는 이사일까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17 조 (사용료등 징수) 임대아파트 사용료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기타 공공요금으로 구분 징수한다.</p> <p>제 18 조 (임대보증금) ①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료의 2월분액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p> <p>②임대보증금은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별도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p>	<p>③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 체결후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른 임대료 기타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p> <p>④제 3항에 의하여 대체납부 하였을 때에는 대체납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정예치하여야 한다.</p> <p>⑤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 16 조 제 1항제 1호, 제 4호 및 제 7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는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후 환불한다.</p> <p>제 19 조 (임대료) ①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발부하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납입고서서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임대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선리 2할 5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③임주자별로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하되 원이하는 절상한다.</p>
--	---

1. 1호에 5명이 1월을 거주하였을 시는 호당원 임대료를 호당월 입주자수로 제한 요금

2. 1호에 1월미만 입주자발생시 1월미만 거주자는 거주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잔여거주자는 제1호의 임대료를 적용한 요금

④임대료 납입고지서는 개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 (공공요금등) ①공공요금등은 관제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② 1월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납기)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③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관장이 부담한다.

제 21 조 (임대기간) ①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후 계속 임대하고자 할때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임대계약서를 제작성하여야 한다.

③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로부터 30일전에 별지 제 12호서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 22 조 (직업안전소 설치운영)

①외관에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직업안전소(이하 "직업안전소"라 한다)를 병설 운영하며 상담실장이 담당한다.

②직업안전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시행규칙 제 9조를 적용한다.

제 23 조 (통보등) ①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제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사업장의 대표는 제 16조의 제 1항제 5호 및 제 5호에 의하여 계약해지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관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전에 작성한 '82 사업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본다.

③(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규칙 이전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

(제 1 호서식)

정신교육인원확정통보서

수 신 :

발 신 :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장

제 목 : 년도 정신교육인원확정통보

년 월 일

구 분	남 자 근 로 자		여 자 근 로 자	
	19세미만	19 - 24세	19세미만	19 - 24세
기업전체총대상인원				
귀사대상인원				
귀사확정인원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제 25 기				
제 26 기				
제 27 기				

*주 : 1) 교육이 확정된 인원은 교육개시 3일전까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함.

2) 등록시간 : 13:00 - 17:00

(제 2 호서식) (교양, 취미) 교육수강신청서								
본인은 귀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양, 취미)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198 년 월 일 신청인 ①							
성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19	(만 세)			
	(한자)	남/여	주민등록번호					
본적								
현주소								
출생지								
최종학력	학교 년 (졸업, 재학, 중퇴)							
경력	기간	직장명		기간	직장명			
가족사항	관계	성명	년령	현주소	관계	성명	년령	현주소
희망과목	교양과목			취미교육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장 귀하 수강신청접수증								
접수번호	성명	희망과목						
		교양교육 ()			취미교육 ()			

(별지제 3호서식)			
<u>입 주 신 청 서</u>			
1. 주택명 :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 부설입대아파트			
2.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한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 적		주민등록지	
원거주지			
거주상태	자가, 전속, 세방(전세, 월세), 하숙	동 수 여 부	가족, 동료, 친척, 기타
근 무 처	회 사 명		
가족관계	부모(생존시만 O 표시) 남 여 중 여	본인월봉급액	원
3. 약 정 사 항			
가. 임대보증금은 입주계약 체결시까지 완납하겠음.			
나.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후 지정기일내에 보증금을 납부치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음.			
4. 첨 부 서 류			
가. 추천서 1부			
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다. 원호대상자 또는 모범근로자증명 1부(해당자에 관함)			
위와 같이 입주신청합니다.			
신 청 인 ㉔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장			

(제 4호서식)

입주희망자추천서

입주희망자 인적사항

			추천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				
주민등록지				
현거주지				
근무부서		직명		
기타사항				

위의 사람을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부설임대아파트에 입주희망자로 추천합니다.

198 년 월 일

추천인 기업책임

직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장

(제 5 호 서식)			
○ 입주결정통지서 입주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 무 처	회사	근 무 부 서	
입주동호수	동 호 방		
계약체결일	198 년 월 일 - 월 일		
<p>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지정기일내에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만일 지정기일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시 준비사항)</p> <p>1. 임대보증금 납부증명사본 1부</p> <p>2. 입주자 보증 각서 (기업체외 장 작성)</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장</p> <p style="text-align: center;">회사 귀 하</p>			

<p>(제 6 호 서식) <u>임대 계약서</u> (재산의 표시)</p> <p>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번지 4호</p> <p>건물 :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부설 임대 아파트 동 호 전평 12평 (주택 내부시설물 일체) 위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자</p>		<p>서울특별시장을 “갑” (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자 을 (물) “을” (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p> <p>제 1 조 (임대료 및 기간등) ① “갑”은 위 표시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아래 표시된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차기간	납부장소
원	“갑”이 산출하여 정한 요금	자 19 자 19	“갑”이 지정하는 장소
<p>② “을”은 매월말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일까지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갑”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율은 년리 25%로 한다.</p> <p>③ “을”은 공공부분의 수도료, 전기료, 오물수거 수수료 및 분뇨수거 수수료 등을 공동 부담하여야</p>		<p>한다.</p> <p>제 2 조 (임대료 등 변경) “갑”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고 조정시에는 “갑”은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p> <p>제 3 조 (임대료등 계산방법) ① 임대료는 임대차 개시일 (임대차 개시일</p>	

은 "임주 지정일"로 한다)로부터 계산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한호 5명이 정상적으로 1개월을 거주할 시에는 호당 월임대료를 호당 입주자수로 제한한다.
- 2. 한호 5명이 거주하다가 도중에 이주할 시에는 1월 미만 거주자는 거주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잔여 거주자는 제1호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② 전기, 수도등 공공요금은 관제 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미만 거주자는 호당 전월(남기)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조 (임주자 준수사항) ① "울"은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관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임주증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5. 관장의 승인없이 타인을 동숙시킬 수 없다.

6.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할 수 없다.

7.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관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손해된 가하였을 때는 "울"은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울"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화재, 도난, 연탄 가스의 사고등 "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울"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일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조 (해약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 4 조 제 1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3. 임대료 및 체납부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4. 기타 지시명령을 위반 또는 불응한 자

② 제 1 항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 6 조 (해약통보) "갑" "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 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증금의 반환)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 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었을시 명도와 함께 반환한다. 다만,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이 "갑"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시에는 우선 공제하고 잔액에 한하여 반환한다.

제 8 조 (원상회복) "을"이 퇴거할시 사용하던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고권등) "을"은 위표시 계약 기간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 10 조 (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갑"은 최고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1 조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 조 (입주 예정일) ① 입주 예정일은 19 로 한다.

② 하등 사유없이 위기일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 "을"이 각 1 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장

"을" 입주자 ㉠

637

(제 7 호 서 식)		남 부 원 부		남입고지서 및 남입 필봉지서		남부영수증 (본안보관용)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예치내역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회관부설근로자 임대아 파트 임대보증금예치	예치내역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회관부설근로자 임대아 파트 임대보증금예치	예치내역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회관부설근로자 임대아 파트 임대보증금예치	예치내역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회관부설근로자 임대아 파트 임대보증금예치
예치금액	원	예치금액	원	예치금액	원	예치금액	원
예치일자	198 . . .	예치일자	198 . . .	예치일자	198 . . .	예치일자	198 . . .
수입일부인 . 은행		위 금액을 년 일 일까지 은행 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일부인 년 일 일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 회관 상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은행 취급가 인	
		수입일부인 .				수입일부인	

제 911 호 서 표 1982.3.29 38-14

(제 8 호서식)

입 주 자 보 증 각 서

입주자 인적사항

본 적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근 무 처			직 명

위 사람이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부설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위원회가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교외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책임을 지게 아
 윽기 이에 신원을 보증하고 이 각서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사 업 장 명

직 인

·대표자성명

(인)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회관장 귀하

(제9호서식)					사 진	
<u>임대아파트입주자관리카-드</u>						
1. 입주자 인적사항						
성 명	(한문)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민등록지		
학 력 (최종학교)	종 교		취 미			
			특 기			
근 무 처	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	
퇴 거 지						
2. 가족사항						
성 명	생년월일	본인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본인관계	

제911호
시
보
1982.5.25 38-21

3. 아파트 이용										
동 수	입 주				퇴 거				비 고	
	년 월 일	사 유			년 월 일	사 유				
동 호										
4. 사용료 납부										
○ 보증인										
보증금액	예 치				환 불				비 고	
	년 월 일	기 간	은행		년 월 일	환불수령자				
○ 월임대료 (원)										
년 월 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납세 확인										
년 월 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납세 확인										
작성자: 지 성명 (인)										

38-22 제911호 시 보 1982.5.25

(제 10 호 서식)

임대계약해지통고서

임대아파트 동 호

귀 하

귀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청 소년회관운영규칙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해지를 통고하오니 198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고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
2. 입주중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대여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켰음.
3.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
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고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손해를 기하였음.
5. 규칙 제 12 조에 의하여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자
6. 타기업체에 전직 (단, 전직 기업체에서 재추천을 받은자는 제외)
7. 임대료등 2개월 이상 체납
8. 회관장의 지시 명령위반 및 불응
9. 기타 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

198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㉔

(제 11 호 서식)

남 부 원 부

년 도	월 분
성 명	
주 소	
내 역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 회관부설근로자임대아 파트 임대료
남 부 금	임대료
	연체료
	합 계
납부일자	19 년 월 일까지
납부은행	
수입일부인	은행

남입고지서및남입필용지서

년 도	월 분
성 명	
주 소	
내 역	
남 부 금	임대료
	연체료
	합 계
납부일자	19 년 월 일까지
납부은행	
수입일부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장

영 수 증

년 도	월 분
성 명	
주 소	
내 역	
남 부 금	임대료
	연체료
	합 계
납부일자	19 년 월 일까지
납부은행	
수입일부인	은행 취급자

38-24 제 911 호
보 1982. 5. 25

(제 12 호 서식)

임대아파트계약해지신청서

임주자 인적 사항	입주장소	아파트 . 동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입주년월일	년 월 일
퇴거지		퇴거예정일		
해지사유				

위와같이 임대아파트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198 년 월 일

임주자 ①

서울특별시 장 귀 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04 호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고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을 도시계획법 제12조

○ 시설조서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1.12.31)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26.

서울특별시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강서구방화동 487 일대	2,569 m ²	시내버스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05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 건설부고시 제 464 호 (81.12.13) 동고시 제 172 호, 제 174 호 (82.4.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176 호 (82.4.29) 로 변경 결정되고 재 결정한 천마공원의 5 개공원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동법시행령 제 9 조 제 3 항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도시정비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2. 5.29.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 승인조서

공원종류	공원명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 점	변 경	변경후	
근린공원	천마공원	강동구마천동	195,590	감 14,870	180,710	변경결정
"	농동 "	성동구농동	492,102	증 68,450	560,552	"
"	5.16 "	영등포구문래동3가59 일대	26,102	감 1,693.4	24,408.6	"

공원종류	공원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근린공원	우장공원	강서구 내발산, 동촌, 화곡동	232,326	-	232,326	재결정
"	대방공원	성동포구 대방동	53,080	-	53,080	"
"	양재공원	강남구 양재, 서초동	350,200	-	350,200	"

나. 지적승인도면 : 별첨과 같음 (생략)
 * 변경공원에서 변경된 구간외의 계획경계는 종전과 같으므로 생략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5 호 (81.6.15) 및 동고시 제 416 호 (81.11.14)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홍익대학교 및 경희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1.12.31)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31.
 서울특별시 장

가. 홍익대학교
 1) 준공예정일
 당초 : 82.2.28
 변경 : 83.8.31
 2) 기타사항 : 변경없음

나. 경희대학교
 1) 준공예정일
 당초 : 82.2.28
 변경 : 82.6.30
 2) 기타사항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7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294 호 (78.1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36 호 (80.9.30)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170 호 (82.4.21) 로 공업용교한바 있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도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31
 서울특별시 장

<p>1. 사업시행의 위치 : 성북구 동소문동 1가, 성북동 1가, 삼선동 1가, 동소문동 2가 일부</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미아로 확장공사</p> <p>3. 사업의 규모 : B= 5-10 M, L= 780 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성북구청장)</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83.11.31</p> <p>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칭주소</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margin: 0 auto; padding: 5px;"> <p>공 고</p> </div> <p>◎서울특별시공고제 220호</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에 대하여 그 지정율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5. 26. 서울특별시청</p>
--	---

지정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사유	조치내용
성북제 15호	금호설비	성북구길음동 20-9	박종호	무단폐지	지정취소

<p>◎서울특별시공고제 221호</p> <p style="text-align: center;">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p> <p>공업표준화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K·S 표시정지처분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5. 25. 서울특별시청</p>	<p>허가번호 : 제 2388호</p> <p>허가일자 : 1981.5.22</p> <p>제조업체명 : 봉신평업주식회사</p> <p>대표자 : 서정인</p> <p>소재지 : 서울구로구신도림동 390-7</p> <p>규격번호 : KSC 4202</p> <p>품명 : 저압 3상유도전동기</p> <p>종류, 등급 : 저압특수농형 1종 밀폐형 220/380V 4극표종</p> <p style="text-align: center;">60 Hz 5.5-37 kw</p> <p>처분일자 : 1982.2.10</p> <p>해제일자 : 1982.5.25</p>
--	--

○서울특별시공고제 222 호

구산동가압장시설공사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68 호 (82. 4.26) 로 지적승인고시된 은평구 갈현동 "구산동가압장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상하수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2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위치 : 은평구 갈현동 333-9외 2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수도시설)

구산동가압장시설공사

다. 사업규모 및 면적 : 316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종합건설본부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사업실시계획인가즉시

2) 준공예정일 : 82.11.3

바. 사용 또는 수용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와의 권리경세 (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도시수용법 제 4 조 3 항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생략)

아. 공람기간 : 공구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상하수부에 제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산 동 가 압 장 부 지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활전토지			분활후(수용대상)토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은평구갈현동	333-9	대지	219	333-9	대지	219	은평구갈현동 333번지	박계원	
	"	317-5	도로	61	317-5	도로	61		서울특별시장	
	"	317-6	구거	36	"	구거	36		"	

○서울특별시공고제 224 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40 호 ('81.

9.22)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시장)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1 항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한다
 2. 본사업에 대한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27.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성내동 428-2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시장)
명칭 : 둔촌시장 (소매시장)
- 다. 사업의 규모
 - 1) 지 적 : 3,316.3㎡
 - 2) 건축면적 : 1,782,496 평
- 라. 사업시행자 주소 : 강동구성내동 428-2
성명 : 둔촌시장(주)대표 한웅석, 김성자
- 마. 사업시행기간 : '80.11.27 - '82.9.30.
- 바. 준공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226 호

도시계획사업 (백화점) 변경시행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30호 (80.1.30) 로도, 시계획사업 (백화점) 시행허가한바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변경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28.

서울특별시

- 1. 사업내용
 - 가. 위치 :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산 67-61
 - 나. 사업명 : 도시계획사업 (백화점)
 - 다. 사업규모 : 대지 : 3,097
연건평 : 14,594.7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산 67-2
진영건설(주) 대표 김익진
- 2. 변경내용
 - 가. 당초 : 1980년 2월 1일 - 1982년 5월 30일
 - 나. 변경 : 1980년 2월 1일 - 1983년 5월 30일

◎ 서울특별시공고 제 227 호

건설업 (단종) 면허영업정지공고

다음업체는 건설업법 제 37조 제 2항 9호규정에 의거 건설업 (단종) 면허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기 공고한다.

다 음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단종번호	위반사항	근거법규	영업정지기간
영보공업(주)	우교성	마포구 합정동 414-21	서울 13-296	건설기술자 면허증대여	건설업법 제 37조 제 2항 제 9호	82. 5.28~ 82.11.27

1982. 5. 28.

서울특별시

시 령

© 1982년 5월 28일자

령제 21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천호	82.5.10 사 인사발령 제 204	종로구	지방수의원보시보
최제년	호에 의한 임용을 미착으로 동	중구보건소	지방약무사보시보
김성열	일자르 취소함.	정신병원	"
오전균	"	의약과	"
김선옥	"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지원보시보 (병리)
천양미	"	강남병원	지방간호지원보시보
강인재	"	"	"
신은희	"	동부병원	지방간호지원보
유경희	"	"	"
강명목	"	"	지방간호지원보시보
김경자	"	"	"
남길순	"	"	"
이은용	"	영등포병원	지방간호지원보
박천숙	"	"	지방간호지원보시보
구부서	"	"	"
김재욱	"	"	"
최선영	"	정신병원	지방간호지원보
김태선	"	"	"
서경해	"	"	지방간호지원보시보
백은기	"	아동병원	"
김신애	"	"	"
김명애	"	"	"
정미연	"	"	"
김정아	"	"	지방간호지원보

성명	발명사항	원부서	직급
강영제	82.5.10자 인사발령 제 204	아동병원	지방간호기원보
한경복	호에 의한 임용을 미착임으로	"	지방간호기원보시보
윤미희	동일자로 취소함.	"	지방간호기원보
이분자	"	"	"
정혜	"	"	지방간호기원보시보
이정숙	"	서대문병원	"
조인순	"	"	"
이은진	"	"	지방간호기원보
허경희	"	"	지방간호기원보시보
정금녀	"	"	"
허결애	"	"	"
이옥경	"	"	"
이병숙	"	"	지방간호기원보
최선자	"	"	"
서재경	"	"	지방간호기원보시보
김명숙	"	"	"
김순득	"	"	"
최민자	"	"	"

㉠ 1982년 5월 20일자 명제 238호 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82.5.21-82.8.20 까지 내무국 대기근무를 명함)
 보건사회국 박정희
 지방행정주사
 보건위생과 근무를 명함.

㉡ 1982년 5월 26일자 명제 245호
 경상북도서무과 이원달
 지방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

㉢ 1982년 5월 21일자
 지하철운영사업소 이영제
 지방서기관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제 1호

<p>경상북도의제과 지방기제원(8등급) 심 영 직</p> <p>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p> <p>◎ 1982년 5월 25일자 영제 247 호</p> <p>수원기전과 지방토목기사 조 정 호</p> <p>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81.12.31자 전채(발령 제 540호) 처분을 취소하고 경고함.</p> <p>종로구 신갑철 지방토목기원</p> <p>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81.12.31자 전채(발령 제 540호) 처분을 취소하고 경고함.</p> <p>진숙지도과 이석도 지방건축기사</p> <p>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p> <p>◎ 1982년 5월 27일자</p>	<p>파라 81.12.8자 전채(발령 제 511호) 처분을 취소하고 경고함.</p> <p>◎ 1982년 6월 1일자 영제 248 호</p> <p>종합건설본부 김 부 동 지방전기과</p> <p>지하철운영사업소 파견 (82.6.1-82.11.30)</p> <p>◎ 1982년 5월 26일자 영제 249 호</p> <p>재개발과 조 성 제 지방건축기사</p> <p>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82.5.26-83.5.25)</p> <p>서울특별시 장</p> <p>◎ 1982년 5월 21일자 영제 251 호</p> <p>서울시비서관 박 석 현 별정직 4급상당</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대 통 령</p> <p>영제 251 호</p>		
<p>성 명</p>	<p>발 령 사 항</p>	<p>현 부 서</p>	<p>직 급</p>
<p>이 운 호</p>	<p>종합민원실 개설준비요원에 입함.</p>	<p>지하철건설본부전기과</p>	<p>거망해정주사</p>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종협	종합민원실 개선준비요원에 입함.	중구 기획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근도	"	재무국 세무지도과	"
김효권	"	구로구 청소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상호	"	내무국 총무과	"
정성용	"	교통국 관광과	"
황인무	"	강동구 건축과	지방건축기사
<p>강동구건설국장 지방토목기정</p> <p>홍 중 민</p> <p>강동구 도시정비국장 겸무를 명함.</p> <p>령제 252 호</p>		<p>81.12.31자 감봉1월 처분을 전채 으로 변경 처분함.</p> <p>강동구세무1과 지방행정주사 신 동 준</p> <p>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소청위 82-34:82.5.4)에 의거 82.2.4자 전채처분을 취소하고 경 고 처분한다.</p> <p>령제 253 호</p>	
<p>산업경제국연료과 지방행정주사</p> <p>정 인 국</p> <p>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소청위 82-34:82.5.24)에 의거 81.12.31자 감봉1월 처분을 전채 으로 변경 처분함.</p> <p>령제 254 호</p>		<p>중구토목과장 지방토목기과 박 길 동</p> <p>주택개량과 개량2계장 적대</p> <p>강서구토목과장 지방토목기과 조 명 환</p> <p>성 북 구</p>	
<p>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행정주사</p> <p>서 재 학</p> <p>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소청위 82-34:82.5.24)에 의거</p>			

영제 255 호 내 무 국 오 중 석 지방토목기과		내 무 국 신 청 우 지방토목기원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82.2.23자 직위해제처분을(발령 제 72호) 취소함. 강서구 근무를 명함.		부직을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 1982년 5월 25일자 영제 256 호 성 북 구 보 건 소 박 철 호 지방보건기과시브		성 북 구 보 건 소 방 역 과 장, 지방보건기과	
내 무 국 조 병 현 지방토목기과		영 등 포 구 김 용 남 지방차공기원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82.2.23자 직위해제처분(발령 제 72호)을 취소함. 중구 근무를 명함.		◎ 1982년 5월 27일자 영제 257 호	
내 무 국 백 흥 기 지방토목기사		부 직 을 명 함. 4 호 봉 을 급 함. 선 유 수 원 지 사 무 소 근무를 명함.	
부직을 명함. 은평구 근무를 명함.			
내 무 국 김 필 교 지방토목기사			
부직을 명함. 구로구 근무를 명함.			
영제 258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문상	동대문구	용산구	지방행정사무관
최성기	용산구	동대문구 건설관리과장	.

◎ 1982년 6월 7일자				령계 25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종기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감사원	감사주사	
서수석	종로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	감사주사보	
강석원	"	"	"	
주정호	"	"	"	
◎ 1982년 5월 28일자				령계 26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만수	82.5.10자 인사발령 제 203호에 의한 임용미착 으로 동일자 취소함	강서구	지방전기장시보 (7등급)	
백광현	"	강남구	"	
이연호	"	종합종말처리 사업소	"	
차종원	"	"	지방전기원시보 (8등급)	
이영찬	"	"	"	
이병완	"	"	지방전기장시보 (7등급)	
박정순	"	서부위생처리장	"	
송영태	"	"	"	
신호성	"	도시가스사업소	"	
◎ 1982년 6월 1일자				령계 26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권종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민방위국운영과	지방별정직 7급상당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조현호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영등포구	지방별정직 7급상당
김진권	"	민방위국운영과	"
김양환	"	경찰국면허과	"
강환설	"	"	8급상당
구본삼	"	도시계획국지적과	"
김강원	"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령제 263 호

성명	발령부서	호봉	직급
천종수	민방위국운영과	15호봉	지방별정직 6급상당 (화생방지도원)
조현호	관악구	16호봉	" " "
김진권	영등포구	6호봉	" 7급상당 "
김강원	종합기술시험연구소	4호봉	" (공해측정기사)
강환설	경찰국면허과	4호봉	" (전산처리사)
남궁민철	"	3호봉	" 8급상당 "

○ 1982년 5월 28일자 령제 264 호

건축지도과 성이현
지방건축기과

종합민원실 개설준비요원 겸무들 명
함.

도봉구 이기준
지방토목기사보

종합민원실 개설준비요원 겸무들 명
함.

○ 1982년 5월 29일자 령제 265 호

자동차관리사업소 전봉현
지방행정주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에 처함.

자동차관리사업소 김다롱
지방행정주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에 처함.

<p>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박 희 수</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강 남 구 이 한 영 지방행정주사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자동차관리사업소 이 기 권 지방행정주사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자동차관리사업소 김 문 식 지방행정서기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서 울 특 별 시 장</p>
---	--